

(사)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특별사업부 베스트브랜드&패키지디자인어워즈 시행세칙

제1조 [목적]

본 규정은 (사)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의 베스트브랜드&패키지디자인어워즈(Best Brand & Package Design Awards: BBP) 의 진행 및 심사에 관한 기본 내용과 시행세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베스트브랜드&패키지디자인어워즈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.

- 올바른 상품문화디자인의 정립
- 기업들의 상품개발 의욕과 디자인의 질적 제고로 국가경쟁력 강화
- 상품문화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의 브랜드와 패키지를 선정, 시상
- 기업 브랜드 및 상품패키지 디자인에 관한 지속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진작
- 수상상품의 디자인 지도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지도자상 시상하여 산학연 활성화 유도

제2조 [기본방향]

1. 회장은 베스트브랜드&패키지디자인어워즈 위원장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.
2. 우수 언론사 등과 공동주최로 진행할 수 있다.
3. 위원회는 시상부문 및 진행방향을 설정한다.
4.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및 상품패키지를 대상으로 시상작품을 선정한다.
5. 시상부문에 맞추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 브랜드 및 상품패키지를 선정한다.
6. 선정된 브랜드 및 상품패키지에 본 어워즈의 엠블렘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 인증효과를 제고시킨다.
7. 선정브랜드 및 제품패키지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컨설팅을 수행 할 수 있다.

제3조 [운영과정 및 방법]

1. 회장은 운영위원장을 지정하고,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모전 일정과 운영방법을 결정한다.
3. 운영위원장은 전체 운영과정에 책임의식을 갖고 진행하며, 정기총회 시에 운영결과를 발표한다.

제4조 [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]

1. 회장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기준을 정하고 심사를 진행한다.
2. 상의 종류는 종합대상(1-3개 분야), 각 부문 대상(1-2개 분야), 각 부문 최우수상(1-2개 분야), 각 부문 우수상(1-3개 분야)
3. 부문은 교육출판, 교육문화, 상품브랜드, 상품패키지, 상품그래픽, 상품전시, 도시브랜드, 공공디자인으로 분류하되 특성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.
4. 시상 대상 기업, 단체 및 상품은 아래 요건 중 합당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창의력과 융합이 돋보이는 브랜드 및 상품패키지

- 환경친화적인 브랜드 및 상품패키지
- 자원절약 및 재활용이 우수한 상품패키지
-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브랜드 및 상품패키지
- 부문별로 특별히 상품문화발전에 공이 큰 브랜드 및 상품
- 기타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추천한 브랜드 및 상품패키지

제5조 [심사진행 과정 및 방법]

1. 출품업체는 학회 공지에 따라 출품신청 기간 내에 출품신청서 접수 및 작품 이미지파일을 업로드.
2. 출품비 납부
3. 베스트브랜드&패키지디자이너어워즈 운영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
4.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

제6조 수상업체 및 상품에 대한 특전

1. 수상업체에게는 시상부문별로 특별기업회원 및 단체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2. 특별단체회원(회비 년 3백만원)으로 가입하는 수상업체에게는 1년간 우리 학회의 BBP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, 수상작품에 대한 브로슈어제작 홍보, 신문보도 등의 홍보와 디자인, 마케팅, 대외홍보 등의 자문·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.
3. 특별단체회원(회비 년 5백만원)으로 가입하는 수상업체에게는 2년간 우리 학회의 BBP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, 수상작품에 대한 브로슈어제작 홍보, 신문보도 등의 홍보와 디자인, 마케팅, 대외홍보 등의 자문·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.
4. 특별단체회원(회비 년 1천만원)으로 가입하는 수상업체에게는 4년간 우리 학회의 BBP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, 수상작품에 대한 브로슈어제작 홍보, 신문보도 등 의 홍보를 우선순위로 수행하며, 아울러 디자인, 마케팅, 대외홍보 등의 자문·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.

제7조 수상작품 추천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

수상작품으로 선정된 업체 및 단체를 추천한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소정의 출장비 및 섭외 유치 활동비를 지급한다.

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개정 시행한다.